제901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외국환거래법 개정안 (기획재정부)	1. 외국환거래 자료·정보·이행계획 제출 요구(강화) ○ 전시·사변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외환거래 정지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, 완화된 형태의 단계적 대응수단의 일환으로 관련 자료·정보 및 이행계획 제출 의무를 부과 ▶ 외국환거래법 제6조 2. 증권·파생상품 보관·예치·매각 의무 부과(강화) ○ 법 제3조 제1항 제13호에서 "외국환"을 "대외지급수단, 외화증권,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"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고려하여, 외환집중제 적용 대상을 증권·파생상품까지 확대 ▶ 외국환거래법 제6조 3.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인가취소, 영업정지(강화) ○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외환거래 주체가 외국 금융기관과 대고객 외국환 중개회사까지 확대됨을 고려하여, 세이프가드 조치 및 시장교란행위 금지 위반시 등록·인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규정 ▶ 외국환거래법 제12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2	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(신설) ○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을 「출입국관리법」상 거주(F2) 일부, 재외동포(F4), 영주(F5), 결혼이민(F6) 4개 체류자격 규정 * 법무부 임대업 가능 체류자격 유권해석('21.12)에 따른 것임 ▶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2. 조세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거부 요건(신설) ○ 국세 2억원 또는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(행정소송 등은 제외)를 임대사업자 등록거부 요건으로 규정 ▶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3. 조세 체납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요건(신설) ○ 국세 2억원 또는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(행정소송 등은 제외)를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요건으로 규정 ▶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	1. 비중요 2. 중요 3. 중요
3	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(산림청)	1.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(강화) ○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진입로를 산지일시사용 신고 대상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변경하고, 풍력발전시설진입로 설치조건·기준을 신설 ▶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	1.중요 2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확대(신설) o 산지전용·일시사용 제한지역이 아닌 산지에서 임업인이 일정요건* 에서 과수류의 임간재배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허용 * 임업인이 재배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)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일 것 2) 재배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3) 임간재배에 해당할 것(임간재배를 위한 솎아베기를 제외하고는 기존 임목의 벌채를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) ▶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	
4	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1. 임시허가(신설) o 임시허가 시 책임보험 가입 의무 부여 및 보험가입 기준 관련 규정 o 임시허가 시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배상방안 마련 규정 o 임시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 등 규정 ▶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10, 제19조의11, 제19조의16	1.비중요
5	철도용품 기술기준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 차륜 기술기준 변경(신설) o 차륜의 화학분석시험, 기계적 성질 시험, 잔류응력시험, 현미경시험, 마모 홈 형상 기준을 EN표준(EN 13262)과 조화 ▶ 철도용품 기술기준 Part 3(차량용품) 1. 차륜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6	철도차량 기술기준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 고속철도차량 주행장치틀 기술기준 변경(강화) ㅇ 고속철도차량(Part 31) 주행장치틀의 선로주행 시험대상을 확대 – (기존) 신소재 적용 또는 새로운 설계특성을 갖는 대차가 적용된 주행장치틀에 대해서만 시행 → (개정) 새롭게 설계되는 모든 주행장치틀로 확대 ▶ 철도차량 기술기준 Part 31(고속철) 제4.3.2 2. 고속철도차량 구동장치 기술기준 변경(신설) ㅇ 고속철도차량(Part 31)의 구동장치 강도기준 제시 및 설계 안전 입증 의무 추가 ▶ 철도차량 기술기준 Part 31(고속철) 제4.3.7 3. 차륜 기술기준 변경(신설) ㅇ EN 규격 적용 차륜의 잔류응력시험, 화학분석시험, 기계적 성질 시험, 현미경시험을 EN표준(EN 13262)과 조화 ▶ 철도차량 기술기준 Part 81(철도차량 안전품목 검사기준) 9. 차륜, 제9.4 4. 차축 기술기준 변경(신설) ㅇ EN 규격 적용 차축의 인장강도시험, 충격시험 시 시험용 조각의 채취 대상을 (현행) 중공축 내/외부에서 (개정) 중실축까지 확대 ▶ 철도차량 기술기준 Part 81(철도차량 안전품목 검사기준), 10. 차축, 제10.4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7	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 헬리콥터 사고예방장치 장착 의무(강화) ㅇ 민간 헬리콥터 감항검사 시 필수 검사항목으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행기록장치의 대체장비 설치 의무화 ▶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9조 2. 조종사 신체검사기준 강화(강화) ㅇ 항공기사용사업에 종사하는 만 60세 이상의 사업용조종사의 신체검사 유효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▶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 3. 항공장애 시 보고 의무 강화(강화) ㅇ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제출한 비행계획서 상의 탑승 총 인원 外 인원 탑승시 의무보고토록 항목을 신설 ▶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4.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강화(강화) ㅇ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패러글라이더 및 동력패러글라이더의 기체 이력관리(비행시간, 이착륙장소, 비행 전후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)를 기록하도록 조종자 준수사항에 포함 ▶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8	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대상 및 범위 확대(강화) ○ (보고대상) 종전 제출 대상(가격공개대상*, 565개)에 비공개대상**(23년, 29개 / 24년~, 452개)을 추가하여 보고토록 확대 *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**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고해야 하는 항목 - (23년) 594개(공개항목 565 + 신의료기술 29*) * 신의료기술에 대한 활용 모니터링 및 급여화시 근거 확보 목적 - (24년) 1,017개(공개항목 567 + 등재 · 기준비급여 335 + 신의료기술 29 + 선택비급여 4 + 약제 84) ○ (보고범위 및 횟수) 종전 가격공개 제출대상(항목, 기준, 금액) 자료에 진료내역(주상병명 등) 등을 추가하여, 의원급은 연 1회(3월분 진료내역), 병원급은 연 2회(3 · 9월분 진료내역) 보고토록 함 ▶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5조, 제6조, 제10조	1.비중요
9	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가입금액 상향 조정(강화) ○ 산후조리원 배상 책임보험의 보장한도 상향 조정 * 사망/장애시 1억원 → 1.5억원, 감염/부상시 2천만원→ 3천만원 ▶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5	1.비중요